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점검 사전협의 체계 확립 방침 통보

1. 본부장 지시사항('18.3.23, '18.3.30) 및 본부장 방침(안전관리과-2732, '18.4.5)과 관련입니다.
2. 본부 공사장에 대해 다수의 기관에서 일정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으나, 발주 기관과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임의점검 시행으로 행정신뢰 하락 및 법률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공사중 점검 수발로 인한 현장관계자 민원과 관리 공백으로 근로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고 있어,
3.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전협의 체계 확립 방안」을 수립하여 통보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총괄부에서는 One-PMIS 조속 구축(본부장 특별지시) 여부에 따라 사전협의 체계가 정착 될 수 있음을 감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외부 점검기관은 안전관리과와 최소 7일전 점검일정 사전협의 실시
- 사전협의 없이 불시 또는 현장에만 통보하고 점검이 시행되는 경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과 및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 후 점검거부
- 발주부서는 불시점검자에게 본부장 방침사항 이해·설득
- 현장에서는 사전협의 통보된 점검만 수행
- ※ 발주부서는 소관 사업주관부서, 시공사 및 감리단에 방침사항을 반드시 문서로(방침서 첨부) 통보 요합니다.

붙임 : 본부장 방침 1부. 끝.

안전관리과 장종환

수신자 건설총괄부장, 토목부장, 건축부장, 설비부장, 방재시설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주무관 **홍민철** 안전관리과장 04/06
장종환

협조자 주무관 **최영준**

시행 안전관리과-2781 (2018.4.6.) 접수 건축부-4786 (2018.4.9.)
우 /
전화 /전송 / 대시민공개

문서번호	안전관리과-2732			시민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홍민철	장종환	류훈	04/05 김학진
협조	도시철도국장 건설정보관리과장		박상돈 정해민

I · SAFETY · U

안전한 도시 서울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전협의 체계 확립 방안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input type="checkbox"/>	■	
전문가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	
사회적 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input type="checkbox"/>	
성별분리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input type="checkbox"/>	■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	
선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안전 위협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type="checkbox"/>	■	
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지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	
정책 영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input type="checkbox"/>	■	
바른 우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비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어스, 플랜, 앤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input type="checkbox"/>	
결재문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input type="checkbox"/>	■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input type="checkbox"/>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전협의 체계 확립 방안

본부 공사장에 대해 다수의 기관에서 일정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으나,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임의점검 시행으로 행정신뢰 하락 및 법률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함.

I 주 진 근 거

본부장 지시사항(2018.3.23.)

- 본부공사장 외부기관 점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점검 3일전까지 현장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II 안전점검 실태

안전점검 기관 및 대상·빈도

연번	기 관	법적 근거	대상 및 내용	점검 빈도
1	본부	안전관리과	본부 발주 공사 안전·품질 점검	정기점검 월50회 (현장별 1~2회/월)
		발주부서	부서내 현장 교차 점검 (매주 셋째주 수요일 안전점검의 날 등)	점기 점검 (현장별 1회/월 이상)
		도시철도 설비부	본부 발주 공사 건설기계 점검 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2014.3.11.)	현장별 1회/분기
2	안전감사담당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9조 분장	서울시, SH공사 발주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	특별점검 (1회/분기)
3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분장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발주공사 안전 품질관리 점검	정기 점검 월 4회

연번	기 관	법적 근거	대상 및 내용	점검 빈도
4	안전어사대 (특사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간접안전점검 등)	공사장 위험공정 위주로 위반사항 적발	'18년 7월 이후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
5	본청 사업주관 부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	공정진행 여부 점검	필요시 (해빙기, 우기 등)
6	품질시험소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본부 건설공사장(30억이상) 품질시험이행 확인	정기점검 (1회/년 이상)
7	환경 관련 부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 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시전신고 등)	관할 공사장	만원 발생에 의한 점검
8	서울자방 국도관리청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사공실태 점검	필요시 (해빙기, 우기 등)
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관할 사업장 안전점검	정기점검(3회/년) 기획점검(2회/년)
10	시공사 본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도급 공사장	정기점검(1회/월)
11	건설사업관리단 본사 비상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도급 공사장	정기점검(1~3회/월)
12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본부 건설공사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2회/년
13	의회, 구청, 한강사업본부 도로사업소, 견학 등	-	본부 건설공사장	수시

□ 안전점검 실태

-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기관은 3일전까지 외부기관에서 **발주부서** 및 **공사현장**에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 없이 임의로 점검시행
- 본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주부서**나 **감리단** 및 **시공사**는 **사전**에 어느 기관에서 나오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III 불시 점검시 문제점

- 관련법령에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3일 전까지 현장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반하여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행정신뢰 하락 및 법률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3일 전까지 현장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함

- 다수의 불시점검 등에 따른 현장관계자 업무 과중 및 공사지연
- 수검에 따른 관리자의 공백으로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

IV 개선 대책

- 안전점검 기관별 사전협의 실시
 - 사전에 점검 기관별 점검일정을 협의 및 조율하여 관련법에 따라 점검 3일 전까지 현장에 통보하고 점검을 실시
- 점검과 관련된 아래 사항을 사전(최소 7일전)에 안전관리과와 협의
 - ▶ 점검 목적, 일시, 내용,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 사전협의 미시행시 조치사항
 - 사전협의 없이 불시 또는 현장에만 통보하고 점검이 시행되는 경우 현장에서는 즉시 안전관리과 및 발주부서에 통보
 - 발주부서는 불시점검자에게 본부장 방침사항 이해·설득
 - 사전 협의체가 정착되도록 지속적 홍보

* 내·외부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를 One-PMIS을 통해 공유

V

기대효과

- 현장에 점검계획을 미리 인지도록 통보함으로써 공정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계획에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저하 방지
- 본부 및 타기관의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를 One-PMI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현장관리 용이
- 사전협의(예고제)시 계획적 안전관리로 기본에 충실한 현장 조성 및 현재 점검 현황을 점검기관이 상호 공유 및 통제함으로써 중복점검 방지

VI

행정사항

- 건설총괄부
 - One-PMIS 시스템 구축(긴급)
 - 내·외부기관 점검일정,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 안전관리과
 - 외부기관과 점검일정 사전 협의(공사부서 의견 반영)
 - 현장관계자에게 최소 3일전까지 점검일정 통보
 - 안전점검 사전협의 홍보 : 내·외부 기관

발주부서

- 외부기관 점검결과 One-PMIS 입력 및 조치 결과 관리
- 미협의시 점검거부
 - 본부장 방침사항 이해·설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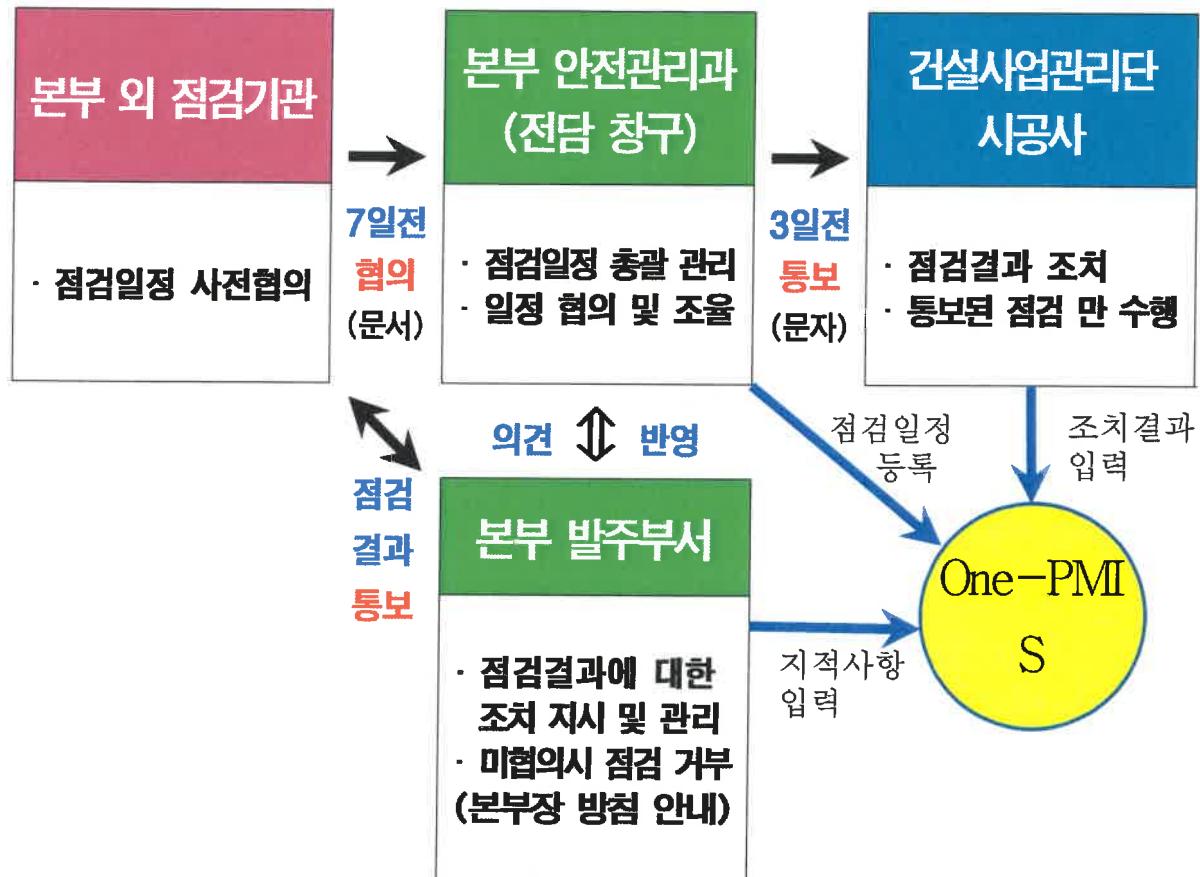
외부 점검 기관 등

- 안전점검 사전 협의 준수 및 불시점검 지양
 - 사전협의시 점검목적, 일시, 내용 등 작성하여 협의 : 안전관리과
- 점검완료 후 지적사항에 대해 공사관계자에게 당일 통보 원칙

붙임 : 1. 안전점검 절차도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안전점검 절차도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8.2.10.] [법률 제14848호, 2017.8.9., 일부개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타법개정]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16.7.4.>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 ②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3.7.>
-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7.>
-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7.>

-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3.7.>
- ⑥ 영 제88조 제3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 현장 표지를 말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3.7.>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8.1.16.>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②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